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12
----------	------

2018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 의 일 : 2017년 12월 18일
- 다. 회 부 일 : 2017년 12월 20일
-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영민 의원)

#### 가. 제안이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3.) 결과 : 의견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 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반영

(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

- 본 개정조례안(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은 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조직법」<sup>1)</sup>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법 개정 사유 :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7년 7월에 이미 정부조직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방치한 바, 향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무국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등 총 99건(조례 68건, 규칙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

---

1) 정부조직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 -----.</p> <p>②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  
-----  
-----  
----- 행정  
안전부장관-----  
-----  
-----.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  
-----  
-----  
-----  
----- 행정  
안전부장관-----  
-----  
-----.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행정안전부장관-----  
-----.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행정안전  
부장관-----  
-----.